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정 1989. 6. 1.(규칙 제 81호)
개정 2010. 12.21.(규칙 제541호)
개정 2016. 3.23. (규칙 제701호)
전면개정 2022.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원칙) 본회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 ② 총학생회칙상 기타 기구의 선거와 당선은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르나, 관련 회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 관련 위원회 혹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선거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조(피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학생회 회원 중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②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 ③ 학부생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제7조(구성)

- ①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 각 학과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인 경우
 2.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선거운동원인 경우
 3. 본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위원장)

- ① 중운위에서 호선된 중운위 위원이 중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 ②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 내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부위원장)

- ① 부위원장은 중선관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선출된 1인으로 한다.
- ② 중선관위 위원장을 보좌하며 중선관위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무)

- ① 중선관위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중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중선관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중선관위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제12조(구성 시기) 중선관위는 선거 3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및 해임)

- ① 중선관위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과 제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중선관위 위원장의 종료공고와 동시에 끝난다.
- ② 중선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중선관위 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 2. 본회의 회원자격 없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중선관위 위원으로서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제14조(비용)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학생회에서 부담한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선거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공고
- ② 선거인 명부 작성
- ③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
- ④ 투·개표에 관한 사무
- ⑤ 당선·공고에 관한 사무
- ⑥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16조(개회 및 의결) 중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선거 일정 공고) 중선관위는 구성 10일 이내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

제18조(선거 시기)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19조(선거 방법) 선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① 선거는 신분 확인이 된 자에 한하여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후보자는 2인 1조(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가 되어 등록하여 전 과정에 하나로 참여하고 선거권을 가진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서를 중선관위에 제출 시 후보 2인 모두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 ④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당해 선거의 온라인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0조(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는 선거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① 등록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서약서 1부
 3.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서약서 1부
 4.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선거권자 100인 추천서 1부
 5.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재학증명서 각 1부
 6. 선거비용 예산안 1부
 7.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 ② 등록일을 어기거나 구비서류를 미비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 운동)

- ① 선거운동이란 당선을 하거나 당선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서 선거 관리에 종사하는 중선거관 위 위원은 개인의 개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제반 활동에 대한 예·결산안을 중선거관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 이후 선거 유세 시작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며, 중선거관위에서 지정한 기간에 따른다.

제22조(선거운동의 금지)

- ① 중선거관위, 총학생회, 중운위, 선거권이 없는 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단, 재임자는 직위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공청회)

- ① 후보자 공청회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청회 일정과 진행 순서 및 질서 유지 등은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홍보물)

- ① 공동벽보와 선거 홍보물은 중선거관위에 의한 공영제로 한다.
- ② 선거 홍보물은 홍보 이전 그 내용을 중선거관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시 선거운동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③ 다음과 같은 홍보물 부착 행위는 제25조에 따라 중선거관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각종 홍보물을, 풀, 본드, 스프레이 등 접착제로 붙이는 행위
 2. 거울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3. 중선거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4. 강의실 및 훈련장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25조(선거운동의 부정행위)

- ①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 행위로 간주하며 중선거관위의 심사 결정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선거무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금전 살포나 뇌물수수를 한 행위
 2. 타 후보 비방 행위
 3. 홍보물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4. 투표 당일 투표 호객 행위
5.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선전시설물을 방해하는 행위
7. 투표권 및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8. 허위 사실 유포 행위
9. 사전 선거운동
10. 선거인 명부 소거 및 대리 투표 행위
11. 중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2.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제26조(제재조치)

- ①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명백한 선거운동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을 시 중선관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선거 무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② 권고 2회 시 자동으로 주의 1회, 주의 2회 시 자동 경고 1회, 경고 3회 시 자동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
- ③ 중선관위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24시간 이내에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 ④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후보자는 제재 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달아 중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후 중선관위는 48시간 이내에 사유서를 참작해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투표 및 당선

제27조(투표 및 개표)

- ①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중선관위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용지 교부 및 개표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② 투표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③ 개표는 개표장소에 모든 투표함이 집결된 후 중선관위 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는 중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중선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 ④ 각 투표장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투표장 및 중선관위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⑤ 감염병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할 시 온라인투표를 24시간 진행하며, 특수상황에 대한 판단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투표 기간 및 장소)

- ① 투표 기간 및 장소는 중선거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② 선거권자 1/3 미만의 투표로 인해 개표가 불가할 시 중선거위의 결정에 따라 연장투표를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투표 기간과 투표장소의 위치설정은 중선거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9조(참관인)

- ① 각 후보자는 투·개표장에 1인 이상의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최대 6인까지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 ② 참관인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참관인 명부에 한한다.
- ③ 참관인은 투표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온라인 투표 시 투표 결과 확인 과정에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함께하여야 한다.

제30조(무효표) 무효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 ② 중선거위의 검인이 없는 것
- ③ 투표용지의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외의 표식이 있는 것
- ④ 투표 기간에 사퇴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 ⑤ 이 외의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는 중선거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31조(당선인 결정)

- ① 당선인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 ② 단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 및 투표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③ 경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로 개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 ④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 무효표의 수가 득표차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시행한다.

제32조(당선공고) 중선거위는 개표 완료 후 6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

제33조(재투표)

- ① 재투표는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실시하며, 재투표에 관한 사항은 중선거위에서 결정한다.

제34조(재선거)

- ① 재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등록된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무효 또는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 경우
 3. 임기 시작 전에 당선인이 사퇴한 경우
- ② 재선거는 임기년도 3 ~ 4월 중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당해 연도 중운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재선거는 선거일시로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 ④ 재선거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5조(선거무효)

- ① 당선인이 결정되어 선거가 종료된 이후 7일 이내에 선거운동 부정행위 혹은 후보자 결격 사유가 적발될 시 중선관위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36조(기타 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37조(효력 및 발생) 본 선거시행세칙은 중선관위가 제정 및 개정하고 중운위의 승인을 거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8조(세칙 개정)

- ① 본 세칙은 중운위의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총학생회장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중운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